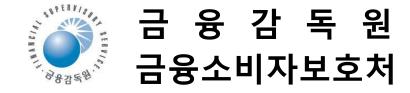
### 202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

#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

2024. 3. 6.(수)



### 목 차

- 1.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감독 업무환경
- 2.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황
- 3.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part1 (소비자보호 부문)
- 4.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part2 (민생금융 부문)

# **소비자보호 관련 금융감독 업무환경**

# 1.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감독 업무환경

### 서민·취약계층의 금융여건 악화

- ☑ 물가상승, 금리인상 및 경기 둔화 등 서민층 금융부담 가중 ▲
- ✓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한
  민생침해금융범죄 기승 우려

### 금융의 디지털화 및 판매채널 다변화

- ☑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거래 증가
- ✓ 온라인 및 플랫폼 중개 등
 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



###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

- ▼ 국내외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상품 관련 손실 가능성 증대
- ✓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민원 증가 우려



### 금융업에 대한 비우호적 시각

- ✓ 금융회사가 고객 권익보다이익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
- ✓ 금융거래 관행 곳곳에불공정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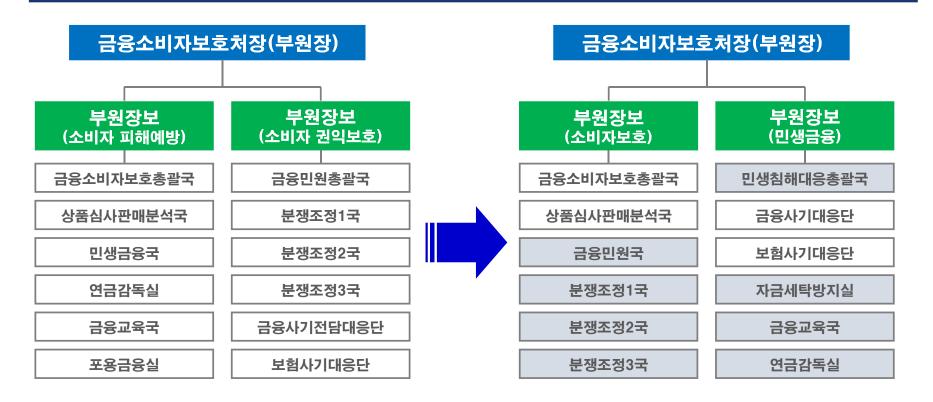


# 2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황

# 2.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황(1) -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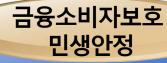
< '24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변경 >

◈ '피해예방 / 권익보호' 체계 → '소비자보호/ 민생금융' 체계



[ **변경 전** ] [ **변경 후** ] 5

# 2.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황(2) - 업무





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<mark>소비자보호 업무총괄, 금소법, 공정금융, 소비자보호실태평가</mark>

상품심사판매분석국 상품 약관 심사, 상품 판매 분석, 미스터리쇼핑, 소비자경보

금융민원국 민원·분쟁업무 총괄, 분조위 운영, 민원조사

분쟁조정1국 생명·손해보험 분쟁조정

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조정

분쟁조정3국 은행·금융투자·중소서민 분쟁조정

### 민생금융

민생침해대응총괄국 민생침해금융범죄 대응 총괄, 불법사금융 예방, 대부업 감독 금융사기대응단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·구제

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 조사·피해 예방

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, 금융실명제 관련 제도기획·검사

금융교육국 금융교육 총괄기획・추진

연금감독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감독 검사

# 3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part1

# 〈소비자보호 부문〉

- 1.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
- 2.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
- 3.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
- 4. 신속한 분쟁처리 및 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지속

# 3-1.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(1)

### 현 횡

- ☑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 **법규**와 제도 정비 및 금융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지속
- ☑ 그러나, 고물가·고금리, 경기 둔화 등으로 민생금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이 수구에만 몰두하여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여전

### 금융업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

### 금융권 향한 따가운 시선 '이자장사' 비판 이유는

4대 금융지주, 올해도 사상최대 순익 전망…17조 돌파할 듯

수조원 손실 임박한 ELS…금융사 돈벌이 수단 전락

### <u>은행·저축</u>은행의 시정요청 약관(공정위)

\* 공정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시정 요청(23.8)

(단위 : 건)

구 분	은행	저축은행	총 계
′22년중 제·개정 약관	873	518	1,391
공정위 시정요청	113	16	129
비율	12.9%	3.1%	9.3%

# 3-1.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(2)

### [1]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「공정금융 추진위원회」설치·운영

- ☑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**총괄·조정 기구**인 「<mark>공정금융 추진위원회</mark>」를 설치하고, [**과제 발굴**\*] [**개선방안 마련·시행**] [**사후관리**]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
  - \*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, 온라인 신고센터(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) 운영 등

### [최근 개선중인 불공정 금융관행]

- [**사례1**]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
  - ▶ 대출취급에 따른 실제 발생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등 마련
- [사례2] 보험 승환계약(갈아타기)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피해 구제
  - 🔷 불합리하게 확대된 **부담보 기간**(보장 제한기간) **축소, 미지급 보험금** 소급 지급
- [사례3]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**화해계약 운영관행** 개선
  - ▶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개선
- [사례4] 정기적금 입금지연 관련 소비자 권익 강화
  - ▶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의 소비자 안내 강화, 입금지연이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

# 3-1.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(3)

### 2 엄정하고 효율적인 약관심사로 공정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

- ☑ 공정위 반복 지적사항 등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·개선\*
  - \* 금융회사 자체 점검 → 금감원 사후검증
- ▼ 전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조건 변경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 정비방안\* 마련
  - \* ('24.9월 전금법 개정시행) 이용조건의 불리한 변경시 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환급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 필요

### 금융회사

✓ 금융회사 스스로 거래관행 전반을 소비자입장에서 면밀히 점검하여 불공정 소지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·개선

# 3-2.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(1)

### 현 황

✓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 또는 가이드라인 제·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소비자보호 미흡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

### 금소법 관련 가이드라인

구 분		배 포
공통	내부통제·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가이드라인	′21.6월
적합성 원칙	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	′21.6월
설명의무	설명의무 가이드라인	′21.7월
	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	′22.8월
	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	'23.1월 (243.시행)
광고규제	광고규제 가이드라인	′21.6월

###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

\* 최근 3년('21~'23년) 78개사(중복포함) 평가결과 30 25 20 15 10 우수 보통 양호 취약 **2**1 20 **2**2 26 0 ■ 23 18

# 3-2.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(2)

### 1 소비자보호체계의 실질적 운영 중심으로 실태평가 실시

- ☑ 외형적 시스템 구축 여부보다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심충적으로 평가
- **☑ 민원급증 회사**에 대해서는 **평가주기 도래 전**이라도 **평가를 재실시**
- **☑ 경영실태평가**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연계평가 대상 확대('23년 중 2개사 실시)
- ☑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회사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실시('23년 중 2개사 실시)

### 2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판매관행 점검

- ☑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이행 등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 실시
- ☑ 미스터리쇼핑 결과 '미흡' 등급 이하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프로세스 개선 유도

# 3-2.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(3)

### 3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각적 모니터링 계속

- ▼ 주요 금융상품 판매동향 분석을 통해 회사별, 점포별, 상품별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 점검
- ☑ 금융상품별 불완전판매 의심지표를 분석하여 감독·검사 부서와 공유하고, 특이사항 발생시 금융회사 경영진 면담 실시

### 4 업권 간 소비자보호 우수제도 전파

☑ 고령자보호 가이드라인,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등 고령자·장애인 지원제도 등 업권간 소비자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차이 해소 추진

### 금융회사

✓ 금융회사의 위험상품 판매 모니터링,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규 등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등 자체적인 체계 개선 노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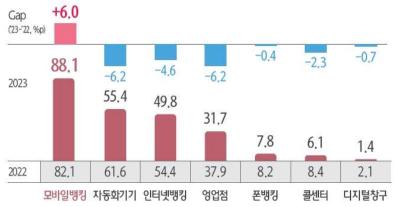
# 3-3.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(1)

### 현 황

- ☑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,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확대, 대출모집인 규제완화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다변화 되고 경쟁이 심화
- ▼ 유튜브,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 광고,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제휴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·광고 행위 확대

### 은행 채널 이용률\* 변화

\* 최근 6개월 내 은행 거래 시 이용한 방법



[출처:하나금융경영연구소(2024), "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4"]

### 플랫폼의 연도별 대출중개액



# 3-3.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(2)

### 1 SNS 등 온라인상 신유형 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

- ▼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\*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新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
  - \* 유튜브 썸네일 등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여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등

### 2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측면 심사 강화

▼ 온라인 예금비교·추천서비스,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의 연계투자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전 소비자보호 관련 부가조건 이행을 면밀히 심사

### ③ 온라인대출플랫폼 등의 영업현황 점검 및 감독방안 검토

- ☑ 금소법 시행 이후 빠르게 증가한 **온라인 대출플랫폼**\*의 **영업실적, 중개수수료** 현황을 점검하고, **온라인 중개플랫폼 다양화**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**감독 강화\*\*** 
  - \* '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총 37개사가 온라인 대출플랫폼으로 등록
  - \*\*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모니터링 및 등록취소 요건 마련 필요성 등 검토

# 3-3.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(3)

### 4 전금업자 제휴상품 등에 관한 약관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

- ▼ 빅테크-금융회사 간 제휴상품·서비스 관련 약관상 소비자보호 방안\* 마련
  - \* 상품·서비스 약관상 빅테크와 제휴금융회사간 책임 범위, 민원·분쟁 발생시 업무분담 명확화 등

### 5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자 금융 소외 방지 위한 노력

☑ 은행권 금융앱 고령자(간편)모드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·개선하고, 유관기관과 함께 **全금융업권**으로 **단계적 확대** 추진

### 금융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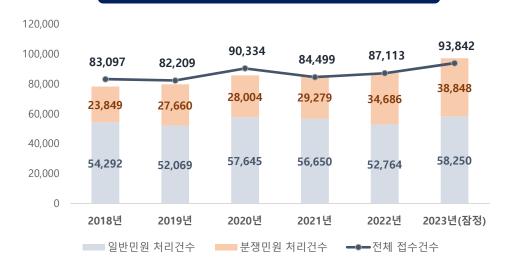
✓ 새로운 상품 개발, 서비스 출시, 광고 기획, 업무 제휴 등 신사업 추진 시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

# 3-4. 신속한 분쟁처리 및 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지속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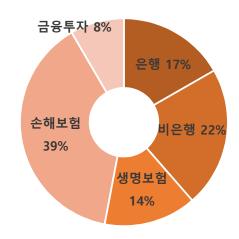
### 현 황

- **\** 
  - 그간 **분쟁처리 혁신방안 시행**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분쟁민원 **처리건수**가 **크게 증가** ('18년 23,849건 → '23년 38,848건)하는 등 **분쟁처리 효율성**이 **제고**되고 있으나,
  - 실손보험 등 분쟁의 법률·의료 **쟁점이 복잡**해지고 **신규접수 건수**도 **증가**하고 있어 **신속한 처리** 및 **적체 해소**에 **애로**

### 금융민원 접·수처리 추이



### '23년 권역별 민원비중



# 3-4. 신속한 분쟁처리 및 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지속(2)

### 1 유사 민원·분쟁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 강화 유도

- ☑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**민원 현장조사 적극 실시**
- ☑ 민원관리 관련 현장컨설팅, CCO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**민원 감축·예방 노력** 강화 유도

### [2] 민원·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활성화

- ▼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 · 유의사항 안내\*, 분쟁조정 사례 · 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 활성화
  - \* 일부 손보사의 「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」를 全計에 모범사례로 전파하여 시행 확대 유도

### ③ 홍콩H지수 ELS 관련 신속한 분쟁조정 추진

▼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에게 **합리적**인 **분쟁조정기준**을 마련하는 등 **신속한 분쟁조정 추진** 

# 3-4. 신속한 분쟁처리 및 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지속(3)

### 4 쟁점중심의 맞춤형 분쟁처리체계로 전환

- ☑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,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\*
  - \* 보험사는 답변서 제출시 사건의 유형정보를 민원관리시스템에 입력, 금감원은 해당유형에 맞는 필수 입증 자료 등을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등 사전심리절차의 효율화 도모

### 금융회사

✓ 「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」 활성화, 분쟁 민원 답변서 품질 제고 등 민원 예방 및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필요

# 4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part2

### 〈 민생금융 부문 〉

- 1.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및 피해구제 강화
- 2.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
- 3. 국민들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
- 4.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
- 5. 체계적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제고
- 6.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제고

## 4-1.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및 피해구제 강화(1)

### 현 황

- ☑ 高 금리,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라 대·내외 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, 특히, 지인 추심,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수법에 따른 피해가 확산
- ✓ 최근 인터넷 카페, SNS를 통해 불법대부광고,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금투 유인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

###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제보 접수현황



###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



# 4-1.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및 피해구제 강화(2)

### 1 범정부 차원의 공조·대응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강화

- ☑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차단 강화
  - \* 범정부 TF와 협조하여 불법카페 계정 차단, 포털 자정유도, 수사의뢰 등 추진
- ☑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
  - \* 민법 제103조(반사회적 법률행위)를 적용하여 지인추심·성착취 추심 등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 및 불법채권추심, 최고금리 초과 차주에 대한 채무자대리(채권추심 대응) 활성화
- ☑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」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인 검거·범죄수익 환수 협조
  - \* (사례)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재산추적 및 세무조사 착수('24.2월)

### [2]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·불법 금융투자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

- ✓ 신·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히 소비자경보 발령하고,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및 불법 광고 차단 의뢰 실시
- ▼ 전 세대에 정보 파급력이 큰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,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취약한 계층(예 : 노년층 등)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

# 4-1.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및 피해구제 강화(3)

### ③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및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

- ▼ 지자체 ·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, 허위 ·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
- 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('24.10.17.)에 따른 개인 채무자의 권익보호\*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이행사항 점검 및 교육 실시
  - \* ①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, ②연체부담 완화, ③추심행위 규제(추심총량제,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등)

### 4 대부업자 중점 검사사항

- ✓ 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불법·부당 채권추심행위 점검(채권추심법, 가이드라인 위반 등)
- ✓ 대주주, 대표이사,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행위(횡령 배임 등) 점검
- ✓ 연체이자율 산정 등 불합리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관행 실태 점검

### 금융회사

✓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금융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고, 대부업계에는 서민 금융 역할을 기대하며 건전한 영업을 당부

# 4-2.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(1)

### 현 황

- ▼ 보이스피싱 근절에 대한 범정부 노력으로 피해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,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여전히 금융소비자들은 피해 위험에 노출
  - ① 최근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이 증가('19년 13.3→'20년 12.9→'21년 12.7→'22년 11.3 →**'23년 17.1**, 단위 : 백만원)
  - ② 기관사칭형,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증가
  - ③ 청첩장·부고장, 택배회사 사칭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성행





# 4-2.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(2)

### 1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

- ☑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계좌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('24.1월)함에 따라 운영 안착을 유도
- 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\*('24.8월 예상)됨에 따라 신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
  - \* 통장협박 대응, 간편송금 악용 방지,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제화 등
- ☑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\*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
  - \* 금융소비자가 한번의 신청으로 全 금융권의 본인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

### ②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

▼ 범금융권·통신업계가 대포폰 개통, 악성앱 설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·제도적 수단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

### 금융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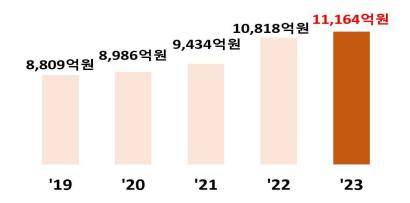
✓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범금융권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

# 4-3. 국민들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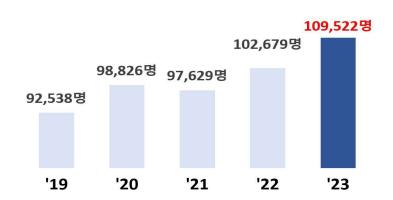
### 혀 횡

- ✓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1천억원, 적발인원 11만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※ 연간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는 민영보험 6.2조원, 국민건강보험 1.2조원으로 추정
- ☑ 브로커 · 보험업 종사자 등이 주도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뿐 아니라,
  자동차 고의충돌 등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도 지속 증가
  - \* 보험업 종사자 : ('21) 1,178명 → ('22) 1,598명 → <u>('23) 1,782명(11.5% ↑)</u> 자동차 고의충돌 증가율('22년 → '23년) : 적발금액 기준 38.4% ↑, 적발인원 기준 17.8% ↑

#### 보험사기 적발금액



#### 보험사기 적발인원



# 4-3. 국민들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(2)

### 1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응 강화

- ✓ 브로커 ·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
   ★① 경찰청, 건보공단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업무협약 체결, ②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
- ☑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맞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체계적 수사를 지원하고, 건보공단·근로복지공단 등과 공·민영보험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 실시

### 2 보험사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

- ▼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\*을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하고, 보험사기인지시스템(IFAS) 데이터 정합성 제고 및 IFAS 메뉴얼 재정비
  - \*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,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,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
- ▼ 보험사기 피해자가 **부당하게 운전면허 벌점**을 받은 경우 해당 **벌점**이 **취소**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(경찰청 등과 공동 추진)

### 금융회사

✓ 조직형 보험사기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, 자동차 고의충돌 다발지역 등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,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「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 규준」 준수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지속

# 4-4.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(1)

###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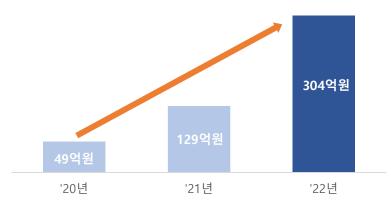
- ☑ 민생침해 범죄(보이스피싱, 마약, 도박 등)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, 금융회사가 관련 범죄 수익금의 세탁경로로 이용될 우려가 큰 상황
- ☑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와 함께 제3자의 개인정보 도용 등을 통한 **비대면 금융사고 발생** 및 이에 대한 **피해**도 **증가**

### 모바일뱅킹 이용실적(일평균)



\* 한국은행 보도자료「2022년중 국내은행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」('23.3.7.)

### 인터넷전문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금액



\* 금융감독원 보도자료「'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」('23.4.21.)

# 4-4.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(2)

### 1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관련 제도 개선 정비

- ▼ 보이스피싱, 마약, 도박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**적시성 있는 금융**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▼「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」(은행권 '24.1.1. 시행)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
 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

### ② 자금세탁방지(AML) 업무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

- ☑ 민생범죄 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AML 내부통제체계 점검
- ☑ 실질적인 AML 역량 제고를 위해 AML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집중
- ▼ AML 미비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신규 규제편입('19년 전자금융 등)된 업권 점검

### 금융회사

✓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책임분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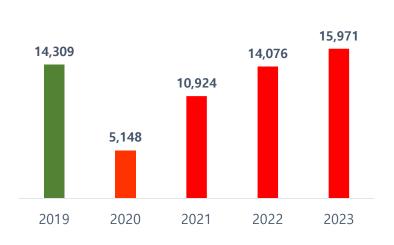
# 4-5. 체계적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(1)

### 현 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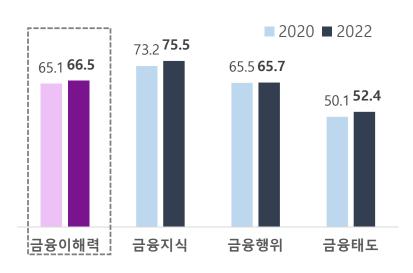
- ▼ 코로나 19 확산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**대면 금융교육**을 **정상화**하면서 **금융교육 실적**이 **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**
- ☑ '22년 실시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.5점으로 '20년(65.1점) 대비 소폭(+1.4점) 상승

####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실적

(단위: 회)



### '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



# 4-5. 체계적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(2)

### 1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실화·다변화

- ☑ 금융회사의 1사 1교 결연율('23년말 73%)과 교육 실시율을 높이는 한편, 보드게임 등 몰입도가 높은 체험형 교육 실시 유도
- ☑ 「초등학생 대상 FSS 어린이 금융스쿨」, 「중학교 자유학기제 금융교육」, 「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」등 학교급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

### 2 청년층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강화

- ▼ 청년 대상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집중 캠페인을 추진하고, 청년 유형별 금융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
- ✓ 고령층 디지털교육을 위해 개발한 금융거래 실습 앱(스마트시니어) 등을 활용하여 취약
  계층 대상 실습방식의 대면 금융교육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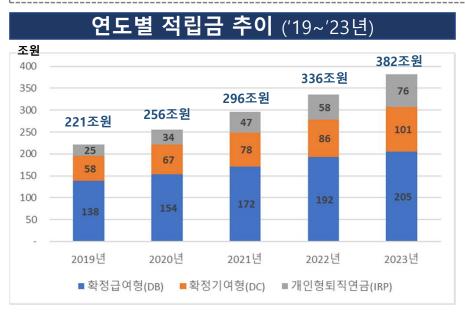
### 금융회사

✓ 1사 1교 참여 확대 및 금융소비자 대상 금융상품 제공 시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

# 4-6.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제고(1)

### 현 황

- ▼ **퇴직연금 시장**은 매년 **약 40조원씩 증가**하고 있으며, 선진국 사례 등을 비춰볼 때 **향후에도**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
- ▼ 수익률은 연평균 2.42%(5년 평균)로 타연금(평균 8% 이상)을 크게 하회하여 질적성장이 정체
- ⇒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도입한 新퇴직연금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필요





# 4-6.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제고(2)

### 1 연금시장의 경쟁 · 혁신 촉진을 위한 新제도의 현장 안착 유도

- ▼ 퇴직연금 新수수료 부과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무 적용모델 제시 및 약관 변경심사
- ☑ 실물이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시되도록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현황 밀착 점검
- ✓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따른 이슈사항 개선 등 운영관리 현황 점검

### 2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 강화 및 가입 활성화

- ☑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연금조회 · 신청 서비스 등 연금 플랫폼 개선 유도
- ✓ 비대면 계좌 이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

### ③ 퇴직연금 관련 중점 검사사항

- ▼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지원 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구축 운영실태 점검
- ▼ 퇴직연금 운용규제 준수현황 확인,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및 위법사항 조치

### 금융회사

✓ '22년부터 도입된 新퇴직연금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편,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

# 감사합니다!

